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8. 26 선고 2020가단514397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담

담당변호사 김동욱, 이아람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6. 24.

판 결 선 고 2021. 8. 26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1. 22. 체결된 증여계약을 25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등

1) 원고는 2018. 3. 16.경 소외 C와 사이에 BMW X5 차량(이하 ‘이 사건 차량’이라고 한다)을 매월 임대료 2,079,000원(지연배상금율 연 24%)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자동차 장기 렌터카계약(이하 ‘이 사건 렌터카계약’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2) C는 2019. 12.경부터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, 이에 원고는 2020. 2. 7.경 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렌터카계약의 해지 의사를 C에게 통지하였다.

3) 원고는 2020. 2. 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45712호로 C를 상대로 이 사건 렌터카계약 해지에 따른 미납 사용료 등 해지 정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,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C가 이의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은 소송절차(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31472)로 이행되었다.

4) 소송절차로 이행된 위 사건에서 C는 이 사건 렌터카계약과 관련하여 무권대리 주장,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 및 약관 설명의무 위반 주장 등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C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2020. 11. 13. ‘C는 원고에게 88,792,781원 및 그 중 80,178,813원에 대하여 2020. 2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(이하 ‘이 사건 판결’이라고 한다)을 선고하였고,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C의 처분행위 등

C는 2019. 11. 22.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을

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, 2019. 11. 22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【인정근거】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1)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렌터카계약에 기하여 원고의 C에 대한 해지 정산금 등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였고, 그 후 C가 이 사건 렌터카계약에서 정한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인 2020.

2. 7.경 이 사건 렌터카계약이 해지됨으로써 C에 대한 해지 정산금 등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,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해지 정산금 등 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렌터카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 정산금 등의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2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렌터카계약과 관련하여 무권대리,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렌터카계약은 무효이므로, 원고의 C에 대한 해지 정산금 등 채권 즉,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 을 제1, 2,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렌터카계약이 무효 내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가 C를 상대로 이 사건 렌터카계약 해지에 따른 미납 사용료 등 해지 정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사건에서 C는 이 사건 렌터카계약과 관련하여 무권대리 주장, 기만에 의한 취소 주장 및 약관 설명의무 위반 주장 등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C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

1)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(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).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을 필요까지는 없고 사해행위 결과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면 충분하다.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10 내지 14호증, 을 제5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이 법원의 D 주식회사,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무렵을 기준으로 한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가액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, 이에 의하면 당시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었고, C는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[C의 적극재산]

순번	항목	가액
1	이 사건 부동산	73,000,000원
2	경북 경주시 F 대 640㎡ 중 1/4지분	25,792,000원
3	경북 경주시 G 대 24㎡ 중 1/4지분	967,200원
합계		99,759,200원

[C의 소극재산]

순번	항목	채무액
1	원고에 대한 이 사건 렌터카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 정산금 등 채무	88,792,781원
2	D에 대한 자동차 리스료 등 채무	18,667,951원
3	E에 대한 자동차 임대료 등 채무	29,526,610원
4	H에 대한 렌터카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 정산금 등 채무	51,972,522원
합계		188,959,864원

2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데, 편의상 그 소유명의를 처인 C 명의로 해둔 것에 불과하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소유명의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에게로 회복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인바, 이 사건 부동산은 처음부터 C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가 처인 C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둔 명의신탁 부동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.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

1) 관련법리

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,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,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

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. 그리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(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다41589 판결,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). 또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,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,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.

2)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

살피건대, 갑 제7호증,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1조합 명의의 2건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말소되었는데, 당시 위 1조합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46,000,000원이었던 사실,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이후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. 11. 18.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71,000,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도 위와 같은 금액으로 추인된다.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렌터카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 정산금 등 채권(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을 의미한다)은 그 원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합하여 9,000만 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.

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시가인 71,000,000원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였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46,000,000원을 공제하면 25,000,000원인바, 위 공동담보가액이 취소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미달하므로,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해야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가액배상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.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위 공동담보가액인 25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위 2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장동민

별지

목 록

1동의 건물의 표시

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빌라[도로명주소]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연립주택

1층 201.32㎡, 2층 201.32㎡, 3층 201.32㎡, 지하 43.47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 :

건물의 내역 : 철근콘크리트조 62.42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421.1㎡

대지권의 종류 :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 : 421100분의 47532

